

第108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 2月 6日(火) 11時02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 議事日程

1. 2001年度 行政管理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2.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等的設置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2001年度 生活福祉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5.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7. 2001年度 保健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8. 2001年度 監查擔當官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9. 2001年度 施設管理公園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 審査된案件

1. 2001年度 行政管理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3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等的設置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3面
4. 2001年度 生活福祉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 23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3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3面
7. 2001年度 保健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 37面
8. 2001年度 監查擔當官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 37面
9. 2001年度 施設管理公園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 38面

(11時02分 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보여주신 선배 동료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단합된 모습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탁월한 경륜과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 올해는 지방자치체를 다시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1949년 지방자치체가 도입, 실시되어 중단의 과정을 겪는 등 반세기 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1년 다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현재 제3기 지방의회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정착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비록 모든 의원님들이 본연의 생업과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로서의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소관 부서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포함하여 여러 안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훌륭한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1월 2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等の設置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및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이 1월 29일 의장

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예,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안전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어제부터 감사원에서 우리 구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역에 민속놀이 등과 같은 지역활동과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한 의정활동 등으로 부득이 오늘 중으로 모두 마치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안전심사는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관리국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을 한 후 마지막으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고 시간적인 절약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안전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01年度 行政管理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11時08分)

○委員長 李東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작년 제2차 정례회의 시 예산 승인과 관련한 내용과 동일하고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들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면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 主要業務計劃**

(行政管理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  
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等의設置運營  
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1時09分)

○委員長 李東奎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안녕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지난 한 해는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만족도 최우수구, ISO 9001 인증, 새서울 가꾸기 최우수구 등 서울시에서 으뜸 구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존경하옵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東奎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李東明 總務課長입니다.

林旻宅 企劃豫算課長입니다.

지난 작년 12월 30일자로 직제 개편과 새로 보직된 李秀傑 自治行政課長입니다.

林星圭 民願奉仕課長입니다.

그리고 평창동에서 근무하다 지난 12월 30일자

로 오신 林秉義 文化振興課長입니다.

任炯正 旅券課長입니다.

(간부 인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하도록 심의되었기에 구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로는 삼청테니스장이 있습니다. 2000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12개 동호인 클럽이 조직되어서 250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고, 1일 평균 53명으로 연간 1만 9천여 명이 삼청테니스장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테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에 월 846만원의 수입으로 연간 총 1억 155만원의 수입을 올려 구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구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청테니스장에서 연습한 실력을 바탕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종로구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상정(안)대로 개정된다면 보다 더 구민 가까이 있는 체육시설로 다가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體育施設管理·運營및使用料  
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년 1월 22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과 관련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의 일부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2일 이상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방의 제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1/2을 반환토록 하던 것을 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규제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권고내용을 보면 먼저 제4조(사용허가)에서 제3항에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2일 이상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7조(시설개방의 제한) 조항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호에 「제13조 각호의 1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또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종로구 테니스연합회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제2호에 「시설의 개보수, 제3호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폐

지토록 한 사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며 규제수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사유입니다. 또한 제8조(사용시간)이 하절기에는 상오 6시부터 하오 9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에다 명시하면 되겠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해서 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에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항을 폐지하고 「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제12조(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의 1/2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0%로 상향 조정하여 권고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 현황은 현행 삼청테니스장 한 곳이 있습니다. 면수는 6개 면이고 면적은 5,280㎡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삼청테니스장의 관리 현황입니다. 이용 현황은 총 12개 동호인 클럽에 회원수가 250명이며, 1일 이용인원은 53명이고 연인원은 1만 9,574명입니다. 수익 현황은 수입이 1억 155만원, 지출이 9,905만원, 수익이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7조 시설개방의 제한규정 중 제2호 시설의 개보수와 제3호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부득이 사용제한 조치가 불가피하고, 이때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7조 전체의 삭제가 타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金賢植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생활체육교실 및 취미교실 운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한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생활체육교실은 성인을 위한 건강체조, 수영, 테니스교실 등 8개 종목으로 21회 1,480명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구, 테니스, 수영, 볼링 등 4개 교실을 운영하여 14회 670명이 참여하는 등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개 동사무소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취미·문화 프로그램교실을 개발 보급하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가정생활과 개인 건강 및 여가활동에 꼭 필요한 제과제빵, 서예, 한지공예, 수지침, 생활영어 등 43개 과목을 운영하여 456회 2만 7,374명이 수강하였으며,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미술, 영어구연동화, 한문교실 등 9개 교실을 98회 1,320명이 참여하는 등 이웃 주민과 친목도모 및 주민 화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종로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 발효되어 각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 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 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구와 동의 생활체육·취미교실 명칭도 통일하고 교육과정이나 강사의 위촉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는 수강료를 2단계로 축소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를 상정(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보다 더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 건설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生活體育教室等의設置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金賢植 行政管理局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0년 1월 22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종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서 명칭 중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을 삭제하고 종로구 생활체육·취미교실 및 문화센터로 했습니다. (안) 제7조 후단에서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4월 이내로 하던 것을 연중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습니다. 별표2에서 수강료 중 주민자치센터와 동청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청사 및 정규 체육시설에 대하여 월 8회 이하 5,000원, 월 8회 초과시는 1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조(명칭)에서 구에서 주관하는 교실과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을 구분해서 규정하였으나 동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교실은 모두에서 보고드렸다고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교육과정)은 현행 조례에서 과정별로 4월 이내로 하되 교육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강사의 위촉)에서 교실의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2(수강료) 중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월 수강료가 현행 조례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정규 체육시설, 동청사 등에 대해서 월 2회는 5,000원, 월 4회는 1만원, 월 8회는 1만 5,000원, 월 12회는 2만원, 월 16회 이상일 시에는 2만 5,000원으로 세분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월 8회 이하는 5,000원, 월 8회 초과시는 1만원으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2000년도 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 실적과 2001년도 생활체육·취미교실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 11월 6일 종로구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동에서 실시하는 생활체육·취미교실은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수행토록 하고 수강료 등은 1인 월 1만원 이하로 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취미교실 운영조례에 보면 단전호흡이나 볼링, 주부수영 같은 것도 우리가 회비를 받습니까? 회비를 5,000원에서 1만원씩 받느냐는 애기지. 2001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에 나오는 회원들한테도 회비를 받느냐는 애깁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건강체조 같은 것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야외에는 무료고 우리 시설 복지센터를 이용할 때만 8회 이하는 5,000원, 8회 초과 시에는 1만원 이렇

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여기에 강사들은 우리가 월정액으로 우리 구에서 지급합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저희들이 강사 종목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월정액으로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예.

○**洪起瑞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지정된 장소에 연중 이 장소에서 실시를 합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그렇지 않습니다.

○**洪起瑞委員** 순회를 합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지역별로 틀리고 지역 실정에 맞게 동센터는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동센터는 동에서 하는데 이런 공원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는 송인, 삼청, 사직, 종묘공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연중 이 곳에서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요청을 하면 순회를 하느냐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예, 순회를 합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강사를 보내줄 수 있네요?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주부수영은 은석수영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왔는데 은석수영장은 개인이 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사실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우리 구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이런 쪽의 강사를 배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회원들을 확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저희들이 수영은 전문분야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시설이나 강사가 자체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洪起瑞委員** 아니, 우리가 주부수영교실을 은석수영장에서 30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와있잖아

요. 그러면 강사를 우리가 거기로 파견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구민회관 수영장 같은 경  
우는 구민회관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거기를 끼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설을 이용합니다.

○洪起瑞委員 아니, 우리가 어차피 강사료를 지  
급하면 우리 구에서 이용하는 곳에서 파견을 하면  
강사료 하나라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 말이  
죠. 사설에다 배치하는 것보다는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구민회관 내에서도 프로  
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설 강사료를 쥐 가면서 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우리가 사설 강사를 하다보면 우리  
구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의 수영인원이 자꾸 감  
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소가 되어서 운영  
상의 많은 적자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여  
건을 갖고 있는데 사설에다가 우리가 강사까지 하  
게 되면 우리 회원들이 은석수영장이나 이런 쪽으  
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강사를 파견하면서까지  
우리 구의 적자적인 요인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  
느냐 그거죠.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구민회관 수영이 그런 여  
유가 생기면 가급적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  
다. 앞으로 그런 스페이스가 생기면 저희가 적극  
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강사  
까지 파견해 가면서 우리 회원을 사설수영장에 뺏  
길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  
씀이 맞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삼청테니스장을 보면 수익  
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입지출이 나와 있는데 지  
금 인건비가 정규직이 3명, 강사가 2명인데 강사  
는 여기의 수익금을 가지고 강사료를 줍니까?  
삼청테니스장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수강료에서 강사료를 충  
당하는데 정규직이 1명이고 기능직이 2명이 상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여기는 레슨비를 받아 가지고 레슨  
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  
아 가지고 강사료를 월정액으로 주느냐 그 말입니  
다.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와 가지고, 60%는 레슨한 사람이 가져가고 40%  
는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 수입에 보  
탔이 되고 있네요?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예.

○洪起瑞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정규직 3명은 우  
리 방법원이 여기에 파견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여기에다 넣는다는 것이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  
공단에다 위탁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단  
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법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제 없어요? 금년 초까지도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말로 다 없어졌다고  
요?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구내 차량이 있잖아  
요. 그 차량에 대해서 종합보험을 전부다 들었습  
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예, 들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시에 동별  
로 훈련을 하고 있죠?

○總務課長 李東明 예,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을 전부다 초  
빙을 합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우리 민방위 훈련은 4년차까  
지는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현대교육관에서 하고  
있고요.

○洪起瑞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 비상 훈련시에 각 동에 연초에 보면 돌아  
가면서 교육이 있잖아요?

○總務課長 李東明 예, 연초비상훈련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때 관내에 있는 구의원들을 초청해서 민방위대원이기 이전에 구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나가서 민방위대원들에게 어떤 격려의 말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것을 묻는 거예요.

○總務課長 李東明 작년까지 참여하셨고 금년도도 참여계획에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을 꼭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동들은 동장들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아서 잡음이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의원자격으로 묻는 게 아니고 의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일부터 민속놀이가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각 동당 200만원씩 지원하도록 승인을 했었는데 절감차원에서 10%를 제외하고 18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180만원 승인을 하든지 해야지 명칭은 200만원을 승인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모순된 것 아니겠어요?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예산절감 10%가 행정부지침에 나와있어 가지고 부득이 2백을 배정했습니다마는 18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차라리 220만원을 잡아서 10% 떼고 200만원을 주든지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200만원을 승인했다고 동에 가서 홍보가 다 되었는데 20만원씩 삭감하고 180만원씩 주면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콩 떼고 팥 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꼭 10% 절감해야 된다면 220만원을 잡아서 동으로 나가는 것은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게 해주어야지 말로만 200만원 나간다고 하고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제하고 플래카드 값 제하고 뭐 제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 없다 그런 얘가지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예, 알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예, 洪起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잘 아시는 국·과장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답변하실 때 무슨 과 어떤 과장이라고 얘기도 안하고 답변하십니까? 속기록에 그렇게 나오면 누가 답변하는지 알겠습니까? 경험 많으신 국·과장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최소한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본도 망각하고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무슨 과 무슨 과장이라는 것을 꼭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본 위원은 金賢植 局長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정태니스장 운영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에 사용시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그 당시에 趙朝翼 課長이 근무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 전입니다. 그때 수차례 지적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수렴해서 사정하다시피 부탁한 적이 있는데 뭐냐하면 나이트게임인데 새벽에 일출 전에 어둑할 때 회원들이 와서 게임을 하고 또 야간에 와서 게임할 때 라이트 등을 켜는데, 제가 부탁하기를 주민들 요구사항이 전혀 나이트게임을 못하게는 못

하겠고 1면을 사용하면서도 전체를 켜놓고 운동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전력의 낭비를 보고 피가 마르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수차례 건의해서 게시판에다가 면 3개 이상을 사용할 때만이 나이트게임을 허용한다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한 후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민들이,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마는 저는 테니스장 근처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가면 육을 먹어도 먹기 때문에 저는 행사 때만 가서 인사말만 하고 빨리 나와 버린다고요. 있으면 있을수록 육을 얻어먹으니까, 제가 테니스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서울시에다 진정을 3번을 했습니다. 그곳이 워낙 오지이고 너무 지저분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했다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해놓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관을 유지하고 특별한 체육시설로 활용하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눈치껏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게시판에다 게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저희 종로구의 구청간부들이 와서 밤늦도록 게임을 하더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면을 6개를 다 사용하더라고, 많은 인원도 아난데 전체를 그야말로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놓고 하는 것을 보고 저한테 신고가 들어왔어요. 전 가보지는 않았습니. 가면 간부들이 왔다고 하면 저하고 부딪치고 싶지 않아서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잇그제 저희 동네 주민들 가운데 지역대표들이 한 50명 모여서 이번 척사대회와 풍물행사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또 다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삼청테니스클럽 회원들도 있었는데 제가 삼청테니스클럽 회원들한테는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삼청테니스클럽은 야간게임을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클럽 회원들을 막 공박하고 두 패로 나눠져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역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아무리 위탁관리를 줬다 하더라도 행정관리국장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팀을 불러다가 지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부탁을 드리고, 제8조 사용시간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폐지를 해버리면 이렇게 제한시간이 있어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심야게임을 하고 있는데 9시라는 시간을 폐지해 버리면 밤을 새워서 테니스를 해도 누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8조의 개정 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엄청난 주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풀어버리면 안되고 존속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것하고 종전의 시간제한 이전에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면 3개 이상을 사용할 때만 나이트게임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東奎 行政管理局長님!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급한 호출명령이 떨어졌는데 예산과장이 안 계셔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대신하도록 양해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산과장님! 다녀오시죠. 行政管理局長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千相旭委員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지금 구의 건전 재정과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나이트경기나 사용시간 제한규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내용은 정부의 일반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상황을 고치라는 데서 지침에 따라서 이 사항이 추진되었는데, 또 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당부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이용자에게 편리를 주라는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시간을 폐지하는 것은 이용주민에게 불필요한 현재의 제도를 없앤다는 뜻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대로 해주시면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3면 이하일 때 라이트를 켜고 게임을 한다든지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야간게임을 지양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시설의 사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에 2개 밑에 면 4개 있는데 사용도 한두 개를 사용하면서 6개를 다 불을 대낮같이 밝히고 있다 하는 그런 제보를 수없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수입지출 내용을 보면 총수입은 1억 150만원에 지출이 9,900만원으로 실 수익 금액은 연간 250만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나이트게임을 계속 허용한다고 하면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력이 얼마나 귀중한 자원입니까? 이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그만나 제한하고 있던 이런 제한조치가 풀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불합리한 행정지침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데 행정력의 어떤 공백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인데 느슨하게 해버리면 어렵다, 이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중앙정부나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수동적인 행정을 구상하다 보니까 원안 가결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서 제8조의 사용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국민소득이 1만불 이상 되면 각종 생활패턴이 스포츠나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의 정신이나 건강에 대한 증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율이 높아집니다. 작년에 시설투자를 해서 현재

250만원이 수익으로 되었다는 앞으로는 더 많은 수익이 올 것 같고 또 대다수 주민들은 구민건강을 증진해서 이런 편의시설이나 여타 지역시설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의원님께서도 이런 스포츠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가지고 건강을 증진해서 구의 행정을 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는 시설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250여 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수익으로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마땅히 오픈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침에 나와서 운동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저까지 나가서 운동하게 되면 정말 큰 데모나 소란이 일어날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삼청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더욱더 좋은

**○千相旭委員** 삼청동 주민들한테는 나이트게임을 절대 못하도록 제가 강력히 금지시켜 냈습니다. 한사람도 안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이것이 4월부터 10월까지 상오 6시부터 개장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전시간에는 라이트를 켜 이유가 없습니다.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한시간 정도만 라이트를 켜면 충분히 하루를 커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폐지했을 경우에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이 조례(안) 제8조에 대해서는 존속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7조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기대회 행사라든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종로구 테니스연합회가 주관하는 경기대회 행사를 제외하고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개방제한을 전면 폐지했을 때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개방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꼭 고지를 해서 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정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조나 8조가 삭제가 될 경우에 하등의 운영상의 애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千相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켜주시는 시간이 10분을 자꾸 오버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시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崔康洵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崔康洵委員입니다. 연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업무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진흥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시간을 폐지하는 것은 조금 전에 千相旭委員님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 시간을 폐지하는 것은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방을 함으로써 관리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7조 시설개방의 제한 1일 사용시간의 삭제 이런 내용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러한 사항이 그대로 삭제가 되어서 구에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개인이나 단체가 이용할 때는 현재 삭제했을 때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하나 삼청동 출신이신 千相旭委員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이트게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3면 이상 사

용시에 라이트를 켜서 하도록 하고 또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체 야간경기는 가능한 억제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각종 스포츠시설의 활용은 권장하고 개방을 안내하고 알선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다수가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는 구에서 억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의원님들도 이런 테니스를 즐기시고 골프도 아니고 이런 테니스는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리고 물론 우리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일괄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어서 지금은 각 동사무소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재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로구에서는 이런 복지센터의 정부방침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나 또 종로구의회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문화복지센터 시설 개·보수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기본모델을 시달하면 동 자체에서 지역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리고 문화복지센터가 주민들의 본래의 목적대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崔康洵委員께서 주민들의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기능을 표출할 수 있는 계

기를 그런 장소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崔康洵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崔康洵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行政管理局長!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보겠는데요, 아까 8조에서 시간을 연장한다, 9시 이후부터, 하오 9시까지 할 때 전력이나 경비가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년 수익이 250만원밖에 안 났는데 만약에 이것을 시간의 제한을 없애버리면 12시까지 한다 또는 새벽 한두시까지 한다 그러면 여기에 삼청테니스장 관리직원은 그때까지도 근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누가 불을 끄고 가며 누가 뒷처리를 하느냐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를 지급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무한정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행정관리국장님은 행자부 지침이다 지침이다 자꾸 그러시는데 지방자치제 그 뜻이 뭐야, 위의 지시 받을 바에야 뭐하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고하는 지침이고

○**委員長 李東奎** 국장님! 가만 계세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제 생각에는 그런 것까지도 계산을 하셔야 되고 삼청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당까지 지급해야 되거든요. 전력 소모도 그만큼 들고 또 거기에 삼청테니스장이 물론 삼청동변두리에 있다고 하지만 야간에 불을 밝히면 주위 사람들 잠자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자부 지침을 꼭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로구 자체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마는 이것은 보류를 하든지 삭제하는 것을, 원안을 그냥 놔두고 살려놓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게 나올 텐데 최종적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료의 예산이나 추가지출이 없느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예를 들어 이렇게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이 만약에 가능하면 이 시간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될 때는 이용자의 부담 원칙입니다. 시간을 많이 쓰면 더 부담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수익에 대해서는 더 이롭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단 하나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가 야간에는 억제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작년에 이러한 각종 예산이 많이 든 것은 전체 돈이 없어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투자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는 250만원 이상의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곳은 일반 사설 테니스장을 활용을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 유일하게 공기 좋은 데 삼청동에 있어서 그런데 일반 지역은 일반 사설 테니스장을 빌려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지역 같아서는 테니스장을 지역별로 그룹 단위로 해가지고 임차를 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玄壽漢委員** 지금 관리하는 공무원이 거기에서 9시까지 야간에 근무를 하고 끝나고 가는데 시간 폐지를 한다면 12시까지 만약 사용한다고 그러면 3시간을 그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그 사람이 무보수로 공무원인 죄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런데 테니스장의 사용을 많이 하는 이용자가 누적이 되니까 우리 수익

에는 늘어나지만 지출은 더 적습니다. 활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구의 재정은 늘어나는데 단 하나 삼청동 출신인 千相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운데 야간에 불을 켜놓고 운동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마는 재정 수익에 대해서는 야간에 할 경우에 돈이 더 늘어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委員長 李東奎 답변으로 간주하시겠습니까? 이따 토론시간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玄壽漢委員 예.

○委員長 李東奎 그러면 우리 玄壽漢委員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07分 會議中止)

(13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千相旭委員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더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사료되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시설 개방의 제한)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1호는 크

게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2호, 3호에서 「시설의 개 보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며 규제의 수준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데 물론 그 테니스 동호인들이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로구민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삼청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누구든지 어떤 테니스장의 면이 잘못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지를 안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어서 꼭 위험이 예상될 때는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누가 봐도 고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이것을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金賢植 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입니다. 宣相善委員께서 시설 개방의 제한, 제7조, 시설의 개 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이 사항은 총괄적으로 이런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안내표지판에는 고지를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고지할 때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宣相善委員 맞습니다. 이것은 동호인들에 대한 국한된 사항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꼭 알려야 할 고지를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고지를 안하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동호인들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나 꼭 동호인이나 어떤 사용하는 사람 이외에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뭘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일반인들이 가급적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개방 제한이나 시설 개보수 이런 사항이 조례로서 고지가 안되어도 운영상 또 내부 규정상으로 고지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의 이 조례로서 이런 것을 고지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宣相善委員 단지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일 개보수를 한다고 할 때 고지를 안하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말이 없겠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폐지해도 관계는 없겠는데, 국장님께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 없이 내부규정상 방침이나 앞에 고지하는 표지판에 표시도 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은 충분하다, 조례로서 개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지한다는 것은 잘못이다는 말씀입니다.

○宣相善委員 알았습니다. 조례(안) 제8조 사용시간입니다.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하절기가 4월부터 10월까지 상오 6시부터 하오 9시까지이고 동절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던 것을 이제는 폐지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변에 65세대가 밀집된 소위 달동네라고 칭해지는 서민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이 있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야간에 어떤 사람은 한가롭게 테니스를 치고 있고 서민들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떤 사람은 한가롭게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되겠는가, 그런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

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체육시설을 이러한 조례로서 시간 조정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에서 현재도 조례로서 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재조정할 수 있다, 지금도 그것은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러한 것이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출신이신 千相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또 경제가 안 좋은데 라이트 경기를 해서 비아냥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런 건 행정지도로써 고치겠다 더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예, 좋습니다. 현재 라이트가 몇 개가 있습니까? 테니스장에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6개가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몇 kw짜리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400kw짜리입니다.

○宣相善委員 본 위원도 대략적으로 400kw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이트를 전면 사용했을 때 1일 보통 현재까지 전력 소모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제가 보고서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마는 요금 계산은

○宣相善委員 국장님! 그래도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면 이런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는 별도로 소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하나 스위치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전체 전원을 올리면 전체 6개가 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스위치가 개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있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등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400kw 6개가 현재까지 시간을 제한해놔서 월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판단을 못하십니까? 준비를 안했지만 대략적으로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宣相善委員 한 면 한 시간 사용하는데 5,000원 이죠? 면 사용이 5,000원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宣相善委員 시간당이에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시간당 5,000원 맞습니다. 휴일에는 시간당 7,000원입니다. 평일이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야간에 경기를 계속할 때 오픈 시켜놓는다면 그 관리책임자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을 목적으로 이것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로서는 이런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宣相善委員 어차피 그 말이 그 말이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니, 다르죠. 조례로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보다도 운영상 내부적으로 꼭 조례로서

○宣相善委員 어쨌든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좋은 지도 모르지만 과연 그와 같은 것을 삼청테니스장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오픈 시킨다고 해서 과연 우리 종로가 정말로 행복이 샘솟는 또 아름다운 종로가 될 것인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해야지 국한되어서 생각하면 안돼요. 그렇죠? 테니스 동호인들은 좋겠지만 우리 전체 20만 종로주민들이 보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즐기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시설면적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저런 면적을 많이 늘렸으면 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장의 입장입니다.

○宣相善委員 국장님 사견입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판단했을 때 득실을 따졌을 때 그것이 좋으나 안 좋으나 이것을 따져야지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우리가 만불 이상의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고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역이 삼청테니스장에 국한되어서 그 곳에 일부 저소득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다소 불편한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상에 아까와 같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행정지도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조례로까지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부담을 안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물이 조례로서 두지 않아도 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어떤 물이 없으면 굉장히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사회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물이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면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오픈을 한다면 밤새 계속 전등이 켜질 수가 있어요. 라이트가. 그러면 거기에 또 玄壽漢委員님도 오전에 질의했던 문제인데요 관리책임자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세세히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러한 조례로서 규정된 시설개방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사용시간을 꼭 조례로서 규정을 안 해도 우리 내부 운영상 규정상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거둬 되풀이됩니다 마는 종로구가 저희 지역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지 지역만 있으면 여러 군데로 해서 저도 운동을 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삭제된다고 해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이용자에게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까지 하지 말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설명을 한 대로 원안대로 해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국장님! 우선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현재보다도 더 좋아진다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더 나빠진다면 안되겠죠. 물론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서는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宣相善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개정을 가결시켜 줬을 때 추후에 불필요하게 라인을 켜놓거나 이런 문제점이 시정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확하게 지키겠는가,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억제할 수 있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저희들이 현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8조에 동절기는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 가능하면 이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이상으로 더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사항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규정상이 이 조례에 없다 하더라도 조례의 시간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우선적으로 삼청동 일대에, 삼청동 출신의 千相旭委員님도 계십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원성이 나지 않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것이 우리 千相旭委員님이 전혀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게 즉시즉시 민원 해결을 해달라는 것을 확실하게 국장님이 거기에 확답을 하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 시간에는 그대로 지키도록 이렇게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그것은 꼭 지켜져야 됩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예,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님! 鄭泰淳委員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宣相善委員님이 소비하신 시간이 27분 정도 소비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에 17분을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삼청테니스장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金賢植 局長님한테는 거기에 이해관계 되는 분들의 민원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대낮같이 불 밝은 라인을 켜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의도 안하고 민원 제기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항상 저한테도 100여 번은 더 찾아오셔서 몇 사람 안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대낮같이 그렇게 불을 켜놓고 있다고 해서 여러 번 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왔었는데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전부다 하나같이 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한테는 그런 건의가 한번도 안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런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대낮같이 불을 밝히고 있는나고 하는, 집행부서에서 건의를 받은 것이 있는가, 주민들이 건의를 한 적이 직접 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委員長 李東奎 민원 떨어진 것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근래에는 없고 옛날에 IMF 나고 나서 혹시 그때는 한두 번

정도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

○鄭泰淳委員 千相旭委員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아마 千相旭委員님한테는 그런 건의를 너무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행사장이라든가 만날 때마다 공식 행사장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서도 다룰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이 부분을 다루면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대변인들은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하고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몇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다루고 있는 사항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골목길이라든가 대로변에 보면 아직도 여러 번 신고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있는 특수한 사람들이 있는 데는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한테 선심을 쓰는 잘 보이기 위한 그러한 시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몇 번 건의를 하고 하면 그것이 시정되었습니까? 안되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도 시정이 안될 때가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순간 회의할 때만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추후에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는 일이 거의 프로테이지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게 되면 그것을 체크를 했다가 추후에라도 '이런 것은 시정을 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질책을 해도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무국장님께서서는 오늘 이 순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물론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론 아까도 주무국장님께서서는 만불, 만불 하시는데 저도 그 전까지는 우리 나라가 만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상기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어디에서 만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언론기관에서도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 만불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만불 시대입니까? 현재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鄭泰淳委員님께서 현재 수학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학문적으로는 말씀드릴 것이 답변이 못되고 현재 저희들이 경제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만불 전후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현재 이러한 사용시간이나 개방의 제한은 각종 규제규정에 해당이 되어서 법률이나 규제를 전부다 풀었습니다. 풀고 이것이 없다 해도 운영상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상오 7시부터 하오 9시까지로 되어 있는 현재 체육시설 사용시간이 특별한 사유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고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굳이 확대해서 나이트경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이후에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업무지도와 행정감독을 통해서 철저하게, 왜 그러나 하면 구정이 조금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마정 달동네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욕을 먹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만에 하나 혹시나 특수한 분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이런 시간관계, 오후 9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끝나

는데 이런 규제를 조례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 상으로 충분히 이 시간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우리가 공무원들 흔히 어떤 국민들은 무슨 일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에 의한 결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千相旭委員님이라든가 동료 위원들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시해본 사람들 같으면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을 겁니다. 거기에 다른 민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적시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텐데 거기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피상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서 문제제기도 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정을 다루고 있는 데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그런 것을 본다면 만약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데도 그런 부분을 상기해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개인의 민원도 민원입니다. 그것은 한두 사람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오고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럼 문제제기를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하는 사람을 빼놓고 말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주무국장님을 위시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우리가 과연 그분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가 봐서 전기 몇 푼을 아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왜 이런 잘못된 것을 의원들한테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됩니까? 의원 별 볼일 없네 하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집행부에 어떤 계기가 없어서 다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러한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추후에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주십사 하면 그것은 근거가 없어서

못합니다 하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근거가 없으면 다루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있고 또 동료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앞으로 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鄭泰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오후 2시 15분이 다되어 가는데 다른 부서 보고를 받을 부분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반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고 핵심만 짚어서 얘기해줄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文化振興課長이신 林秉義 課長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가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의자나 이런 것도 있지만 체육시설은 문화진흥과에서 하죠?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거기에 철봉을 만든다든가 의자를 만든다든가 이것은 전부 문화진흥과에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文化振興課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지가 한 달쯤 되었는데 업자선정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우리 林秉義 課長님이 문화진흥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과약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金賢植 局長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입찰을 볼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모든 공사는 일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소

액이고 이럴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지금 체육시설을 묻는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소액으로 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입찰 볼 만큼 큰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작년 9월 14일 이후부터 방식이 바뀌어서 수의계약이 3,000만원 미만이 되었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 전에는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었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5,000만원입니다.

○宣相善委員 그것은 접어들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성격상 대동소이한 문제인데 지역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상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목과에서도 도로포장을 한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 하수도 공사를 한다 등등 이런 여러 사업이 있고 또 공원의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언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의원들한테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뒤에 주민에게 뭐를 해줬다고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럴 때는 얼렁뚱땅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 의원들이 매번 주장하는 것이 어느 공사를 언제쯤하고 어떤 공사를 하는지 이런 것을 출신 동 의원들한테 알려달라고 수없이 부탁을 해도 전혀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

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우리 구에는 이런 각종 시설물이 파손된다는지 할 때는 즉시 고치라는 체제로 해서 청장 이하 지나 과장들도 바로 산이나 쉼터나 이런 곳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을 바로바로 고치니까 아주 소액인데 이것이 연락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협조하겠다는 것은 수없이 듣는 얘기이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만 공사를 하는데 의원이 가서 감독을 하게 되면 업자도 불편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청 측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냥 해놓고 가면 속에 얼마큼 규정대로 해냈는지 안됐는지 전혀 몰라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거든요. 덮어 버리면 몰라요. 그런데 의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원칙대로 해라”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어서 안한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든다 이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작년도인가 동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아침부터 가서 대기하고 하는 것을 일일이 체크를 했더니 본 위원이 가지 않았으면 대충 두 차로 다 깔고도 남을 건데 하다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다른 데 가서 반 차를 불러다가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의원이 가서 안보고 하고 간 데하고 차가 굉장히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지역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일정과 어떤 공사를 할 것인가를 꼭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2001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알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東奎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지금 다른 업무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짧게 핵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行政管理局長님! 13, 14페이지 좀 펴봐 주세요. 주요업무 금년도 계획 1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새해 들어서 전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지만 동사무소 4군데를 건축을 하고 있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5,6가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4월 30일로 맞춰났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리고 전부 2002년이네요. 그런데 평수도 비슷비슷하고 예산도 비슷비슷해요. 교남동은 2001년 1월달에 시작했는데 4월 30일, 그런데 이 교남동 것하고 이화동 것은 공기가 5,6가에 비해서 짧죠? 어떻게 2002년 4월 30일로 공기가 다 이렇게 맞춰졌는지 무슨 뜻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땅 매수관계가 있는데 늦어질 경우에

○**金正大委員** 그러면 5,6가는 땅 매입에 시일이 많이 걸렸어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그때는 예산도 없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땅만 사고

○**金正大委員** 아니, 어쨌든 사업기간이 7월 1일이니까 5개월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밑의 2개 동하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작년에는 구의 예산형편상 땅만 사고 공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5,6가동이 교남, 이화보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시간이 5개월 더 걸렸다 그런 말씀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교남동은 저희 땅을 사서 금년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金正大委員** 물론 계획이죠. 나도 계획으로 알고 묻는 거예요. 계획이 아니라는 말은 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기가 전부다 4월 30일로 맞출 수 있나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가능하면 그 기간에 맞추

도록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리고 예산을 보면 5,6가동에 10억씩 들어갔는데 2001년도 10억, 2002년도에 10억 20억으로 이 공사가 다 끝나집니까? 전부다 추정치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로 5,6가동 신축은 작년에 기이 투자된 것이 18억 1,900만원이고 금년도에 10억을 하면

○**金正大委員** 어디가 18억이 들어갔다고요?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작년에 땅값이 12억 5천

○**金正大委員** 그러면 부지매입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현재는 나타나지 않죠.

○**金正大委員** 주요계획인데 땅값 들어간 것은 왜 표시를 안했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예산만 10억씩 계상해서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金正大委員** 10억이라는 것이 전부다 세 군데가 똑같이 끝에 조금 달린 게 있습니다마는 비스해서 나는 전부 추정치로 보고 있는데, 추정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돈은 또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주로 이것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예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상황설명이랄까? 모든 것을.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이 예산은 金正大 副議長님도 알다시피 지난번 예산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金正大委員** 그런데 전부 10억씩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10억씩만 종로 5,6가동 청사신축에 10억, 교남동 청사에 10억, 이화동 청사에 10억씩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내용입니다.

○**金正大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 다 추정치라고 하니까 물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13페이지에 다기능 청사신축이라 해 가지고 창신3동 여기를 보면 부지가 419㎡, 건물이 1,640㎡인데 이것이 대지가 우리 구 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行政管理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해서 조합으로 넘겨준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아직 안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전부다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에 반면 여기는 지금 땅을 419㎡와 현금이 13억 5천이 지금 지불한 겁니까?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11억 5,000만원 내년도에 2억을?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왜 한꺼번에 다 주지, 왜 구 예산을 2억은 씹니까? 잔금입니까? 무엇을 표기해 놓은 겁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공기에 따른 건축비로 알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건축비라니요. 건축비가 11억 5천 아닙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총사업비가 13억 5천입니다. 대지하고 건물 전체가

○**金正大委員** 그러면 13억 5천 안에 대지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속기록에 나오니까 확실하게 잘 알고 대답하세요. 확실하게 국장님은 아셔야죠. 과장님들은 물론 잘 알겠지만, 13억 5천인데 지금 왜 2000년도에 분양을 하고, 내가 알기로는 분양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건축을 시작도 안했는데 11억 5천씩 금년에 다 줘야 됩니까? 금년에 이렇게 많은 돈이 쉬어가는 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고 또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그런데 어떻

게 전부다 대지구입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금년에 다 지불하느냐 그 말입니다. 2002년도에는 2억만 주느냐 이 말입니다.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李東明** 總務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2001년도

○**金正大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 해당사항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알기는 총무과장이 더 잘 아니까 답변하세요.

○**總務課長 李東明** 저희 창신3동 청사 건축할 때 우리가 약정을 토지비 포함해 가지고 13억 5,000만원에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불하대금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11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이 13억 5,000만원에 토지 구입비하고 건축비가 포함된다? 이것은 국유지니까 불하를 받는 거죠?

○**總務課長 李東明**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불하를 현재 받았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수속 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불하받는데 작년 12월에, 국무회의 통과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무과를 통해 가지고 재경부에 불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아직 불하가 안되었죠?

○**總務課長 李東明** 예.

○**金正大委員** 그런데 13억 5천에서 2억 남겨놓은 11억 5천은 이미 지불된 겁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한 건도 지불이 안되어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땅이 불하되면 땅값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땅값은 아직 평가금액이 안나온 상태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이 13억 5천이라는 것은 조합하고 계약한 겁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조합하고 건축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3자가 계약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다시 말해서 우리 구청이 조합에다가 출자를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이 관계는 저희

○金正大委員 동네 소문에 억설들이 돌기 때문에 제가 겁테기라도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여기 계획에도 나와있고 해서, 이것은 국장님이나 전 과장님이나 현 과장님이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는 해당 동 의원이신 李東奎議員한테도 자세히 알려줘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13억 5천 내에 분명히 건축비 포함 땅값이 되어 있다고, 누구하고 계약을 했다고요?

○總務課長 李東明 우리 구청하고 조합하고 현재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3자가 계약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나중에 땅을 비싸게 사면 구청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땅값이 비싸면 건축비를 적게 냅니다. 총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3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金正大委員 예를 들어서 불하대금이 평당 지금 얼마씩 추정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추정치가 있었으니까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추정 땅값이 구체적으로 평당 얼마라고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8억에서 10억 정도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8억에서 10억이 토지대금이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해서 땅을 조금 비싸게 샀을 경우에는

○總務課長 李東明 그러면 건축비를 적게 주는 거죠.

○金正大委員 그러면 건축비가 3억 5천만 들어가는데 분양되는 건 우리 구유재산으로 분양받는 것이죠?

○總務課長 李東明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약 한 500평이 조금 넘네요. 이것이 굳이 1층의 제대로 된 땅을 우리가 일부분도 못 차지하느냐 핵심은 그것입니다. 다

시 말해서 구의 예산 십 몇 억을 투자를 했으면 1층의 점포가 20개라고 하면 다만 5개라도 돌아오도록 고집해야 될 것이 아니냐, 6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창신3동 주민과 수차에 걸쳐서 청문회도 갖고

○金正大委員 창신3동 주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창신3동 주민 일부분이지 뒤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그렇죠? 그 분들하고 지금 박정태 의 8명 그 점포를 산 사람들

○總務課長 李東明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분들로 해서

○委員長 李東奎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아까 회의시간에 우리 金正大委員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지금 다른 것도 산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도록 위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다 이 말입니까?

○總務課長 李東明 이것은 창신3동사무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다 회의도 했고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들은 결과 2,3층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래서 1층은 하나도 받지 않도록 했다?

○總務課長 李東明 예, 그렇습니다. 1층을 받게 되면 부담 금액도 늘어나고 면적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2층이 몇 평이고 3층이 몇 평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東明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金正大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金賢植 行政管理

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會議中止)

(14時43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年度 生活福祉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委員長 李東奎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도 오전에 행정관리국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

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 主要業務計劃

(生活福祉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 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4時45分)

○委員長 李東奎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가축사육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안녕하십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課長입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課長입니다.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課長입니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課長입니다. 같이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李東奎 시민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간

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권고사항으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우리 국민의 보건 향상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 제4조제3항 중 허가증 게시 의무사항은 형식적인 것으로 삭제하고, 제6조제1항 가축사육자에 대한 감독사항과 제2항 가축사육자에 대한 사항을 1개 항으로 통합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家畜飼育制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년 1월 22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던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가축허가증 게시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조에 의한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축산법 제2조 및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 가금 등 거의 모든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 가금류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가축사육 허가현황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규제 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권고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은 종전에 서울시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1998년 5월 1일 자치구조례로 이관 시에 필요했던 규정으로 현행 조례 개정 시에는 전혀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안녕하세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종로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李東奎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1998년 서울특별시 노사협의회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합의 결과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서 후생복지 비용 등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반영하여 지출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사협의회 합의내용과 관계되는 기금의 용도로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에 사용한다는 제3조제2항과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한다는 제6조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후생복지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준칙과 서울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은 노사협회의에 따라 1998년 11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조례와 현실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한 과제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로써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再活用品販賣代金管理基金設置 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東奎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姜光日 專門委員!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2001년 1월 22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중 50% 범위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지급하던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청 노동조합간의 노사합의에서 '98년 1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제1호에서 기금의 용도 중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이내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를 보면 첫째,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둘째,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셋째, 기타 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두번째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년도별 수입·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사유인 '98년 10월 12일 서울시

와 서울시청 노동조합간의 노사합의 사항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98년 11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인 '99년부터는 판매대금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는 바 이는 환경미화원의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및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자기 소속의 무슨무슨과의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꼭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께서 질의하셨습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환경미화원들한테 50% 정도의 장려금으로 지급을 했죠? 지급을 했는데 이 조례로 해서 그것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것이 없어졌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清掃行政課長 鄭倫漢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억하기로는 洪起瑞委員님께서도 한번 또 질의를 했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 조례(안)을 다시 전면적으

로 현실과 법체계와 같이 맞춰나가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재활용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재활용 환경미화원 수가 줄어들고 대행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또한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등장한 게 작년에 나산공원에 재활용 선별장이 폐쇄된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기동 공관단지 부지도 서울시에서 외교단지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이주를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활용 활성화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활용 선별장 내지 처리시스템이 우리 구에서 자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제일 안타깝고 그렇지 않으면 대신 골목길에서 재활용품을 쌓아놓고 선별작업을 하고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또 대행업체가 하는 지역은 그렇게 할 여력도 안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에서 하던 것도 지난번에 효자동에서 하던 것은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2층에 재활용품을 일괄적으로 모아놓으면 이게 잡쓰레기로 변해버립니다. 재활용품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받아줄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쓰레기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이라고 또 안 받아줍니다. 그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민간기업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별 시스템을 도입해서 부지가 마련되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런 데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받아만 줘도 고맙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에서 지난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노원구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재활용 처리를 못하게 되니까 노원구에서는 돈을 톤당 3만원씩 주고 그런 데 처리장으로 보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해가지고 다행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주기로 했다가 다른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혼합된 재활용품을 보내는데 kg당 얼마씩 우리가 돈을 받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알아보고 내부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환경미화원들이 가장 초기단계에서 수집 선별해서 판

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에서 있는 여건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못되는 상황에서는 그나마 작년에 5,900만원 정도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거뒀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조금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합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루트를 좀더 발굴하고 확대시켜 보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판매하던 루트도 단가를 많이 주는 데를 찾아 가지고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洪起瑞委員** 환경미화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이 되고 뭔가 도움이 되어야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일을 하는데도 노동의 대가가 안 돌아오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것은 노사간에 합의로 예를 들어서 50%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명목으로라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한다면 우리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지금 鄭課長께서 말씀을 했듯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밑바닥에서 일을 해주는 분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라도 복지문제나 시설 문제나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대안을 내가지고 그분들한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예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알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을 보면 직업소개소 현황을 보면 무료소개소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무료소개소는 어디어디예요? 무료로 소개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무료소개소는 서울대학 병원에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여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구체적인 명단은 서면으로 해드릴게요. 무료소개소라는 것이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에서 간병인들을 소개해준다든지 무료로 돈을 안 받고 그런 소개소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런 곳이 여섯 군데나 돼요?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13쪽에 보시면 이웃사랑실천 선행업소 표찰 달아주기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굉장히 취지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표찰을 달아주고 나서 연간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구나 동 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행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달아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달아준 이후에도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달아준 이후에 별도로 도와준 것에 대해서 별도로 집계를 낸 사항은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 선행업소 표찰을 달고 난 이후에 아무런 실적이 없을 때에도 계속 이것을 달아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연간 달아주기 이전에 불우한 노인들한테 점심식사라도 한 끼를 대접을 했다든지 어떤 이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달아줬을 거란 거예요. 달아준 이후에도 년에 1회 2회라도 했는가 한번 파악을 해봤느냐는 얘기지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선행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꾸준히 선행을 한 업소에 대해서 달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달아주고 나서 별도로 집계 같은 것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국장님은 꾸준히 몇년 동안 선행을 한 업소에 달아줬다고 하는데 이 업소 표찰을 달고 나서 연간 우리가 봤을 때도 한번도 이웃을 위해서 어떤 베푸는 사례가 없는 업소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찰을 달아놓고 나면 아무래도 영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달기 전과

달았을 때와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업소가 있다는 얘깁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안을 해서 많은 지원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꼭 그런 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위문품 해가지고 가구당 3만원씩 상당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600가구에 3만원 상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해드린 것이 저희가 그동안에 물품 같은 것을 많이 구입을 해서 지원도 해봤는데 필요한 물품도 있고 필요치 않는 가구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농협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농협매장에 가서 사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바로 물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농협 상품권을 3만원짜리를 줬는데 노인들이 농협을 찾지 못해요. 그래 가지고 와서 이걸 어디에서 하느냐고 가지고 다니면서 해매는 노인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협 상품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마을마다 다 있다고 하면 의도가 좋지만 우리 중로는 아마 사직동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3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더러 사 내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오서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품으로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드려버리면 되는데 농협 상품권을 드리니까 어디에서 구입할지를 몰라요. 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해매요.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런 것은 저희가 보안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복지사를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갖다드리든가 동차량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서 갖다드린든지 그것은 보안을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게 해야지 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해매고 있어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좋은 지적이십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43쪽에 보면 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낙원동에 재활용 수집소가 있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清掃行政課長 鄭倫漢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현재 수집이 잘 안되고 있어요. 파악해보셨어요? 과장님!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그 문제는 실상으로 최근에 와서 가전제품이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느냐면 잘 안 해갑니다. 왜 그러냐고 거기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는 수집을 해서 판매가 가능한 것만 수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으로는 요새 와서 가전제품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좋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산답니다. 흠집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새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배출하는 것하고, 냉장고는 조금 지나면 전기용량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냉장고는 길에서 보기에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출자들은 배출을 하면 여기에서 팔아먹지 못하는 거니까 수거를 못해간다, 결국 그것은 쓰레기로 해서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활용센터에 보내서 특이품목, 요새 가구나 가구도 새것 비슷한 것 가전제품도 컴퓨터 같은 것만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피품목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오래 사용했으면 좋을 텐데 특히 용량을 크게 바꾸면서 내놓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도 잘 안될 뿐더러 전기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관계로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합니다.

○洪起瑞委員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운영을 하지 말고 폐쇄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플래카드는 여기

저기 달아서 걸어놓고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3일 기다리십시오, 4일 기다리십시오 하고 회피를 해버리니까 우리 구청만 공신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듣기에는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전화를 해도 오지도 않고 4일 기다려야 된다, 기사가 없다고 하고 오지를 않아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운영을 안 하면 괜찮은데 플래카드는 종로 곳곳마다 부착을 해놨어요. 7189인가 뭔가 전화번호도 있던데 붙여놓고 막상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하면 '3일 기다려야 됩니다', 3일 지나서 전화를 하면 '기사가 없어서 2일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주민들이 차라리 빨리 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운영이 안되고 적자가 되어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폐쇄를 해버리면 그 부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재활용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여기에서도 수익이 크게 남지도 않고 하니까 동시에 주민들이 내놓는 문의 전화는 굉장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배차도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그 가동 인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대한 빨리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괜히 문만 열어놓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게 되면 애꿎은 구청만 욕을 먹지 그쪽이 욕을 먹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알겠습니다.

○洪起瑞委員 46쪽 서울 노인복지센터 개설 운영이 있는데 경운동 90-3 외 1 이곳의 위치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구 통계청 건물이

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복지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를 들여서 지금 기존 건물이 거의 골조만 놔두고 철거되다시피 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면 노인복지센터가 우선 들어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이것은 장려사업이고 참 좋은 특수 사업입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 그래서 저희도 신문에다 수차 나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까마는 작년 6월 이후부터 건물을 구하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1차 후보지가 한전변전소 건물 그것도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비원 앞에 중앙병원 건물 여러 가지를 하다가 마침 통계청 건물이 이사를 가고 고합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추천을 못했는데 고합그룹에서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10월말까지 이행을 못했습니다. 또 2개월을 연장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합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행자 부하고 수차 저희 직원들하고 저도 가 가지고 교섭을 해서 다행히 그곳을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서울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노인복지센터를 하게 되면 아마 사업자 선정까지 해서 관리문제는 저희들한테 넘어올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몇 월달에 준공이 완료될까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서울시에서는 탑골 공원을 성역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골공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노인 복지센터로 모셔 가지고 거기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치료도 하고 이발도 해드리고 노인분들이 소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그쪽으로 모시고 식사도 제공하고 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길에 줄서서 기다린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이 3·1절을 기해서 탑골공원 성역화 선포식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센터는 거기에 맞춰서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니까 지금 시에서 서둘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달말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글썄요, 내부시설이 일부 미비하더라도 그때는 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洪起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짧게 시간을 맞춰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 보면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이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만 놔두고 2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地域經濟課長 金容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축조례에 관한 제한 규정은 저희 종로구하고는 관계없는 조례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허가된 건수가 한 건도 없고 앞으로도 사실적으로 거의 허가할 수 없는 곳이 저희 종로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조례제4조의 허가증 게첨 의무를 삭제하는 것과 6조의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규정에서 1항과 2항을 통합해서 주민들의 어떤 보건위생을 강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없다고 그래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놔둔 것인데 이 경과조치를 보면 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서울특별시가축사육에관한조례

에 의해서 이미 허가가 '88년 이전에 나갔다면 그 어떤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 조례개정이라도 보호가 되어야지 이것을 삭제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우리 구 조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아니죠. 그 당시에는 구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건축에 관한 조례가 통용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보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있었을 경우에 이 허가행위가 있었던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된 바로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이 우리 구 조례 이전에 이미 나간 것이기 때문에 경과 조치로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88년도에 기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宣相善委員** 한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저희 관내에서 허가를 그동안 했다거나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88년 이전에 나간 것이 지금까지 계속 시효가 유효하다면

○**宣相善委員** 우리 종로구의 현실로 봐서는 지금 그와 같이 적용될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88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조례로서 부칙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경우에 효력이 있겠지만 그 조례에 대한 이력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부칙부분을 손질한다지만 이것을 삭제하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단 우리 종로구 입장에서 본다면 '88년 이후에 그런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조항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 경과 규정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 놔둬도 하등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宣相善委員** 놔둬도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현실로 봐서는 부칙의 2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이것을 다 삭제해도 관계가 없겠다 이말이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입법기술상 경과조치 사항 같은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전후 배경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宣相善委員** 맞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후에도 그 근거인 부칙을 보고하면 좋겠지만 이미 '88년도에 다 되어 있고 지금까지 허가한 자도 없고 우리 종로구에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만 '88년 이전에 하도 오래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만의 하나 이전에 어떤 권리주장을 하는 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 경과조치를 없애버리게 되면 조금

○**宣相善委員** 우리 종로구에는 단 한 건도 지금까지 허가된 사항이 없었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굳이 또 없앨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宣相善委員**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委員長 李東奎**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없애겠다는 겁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저희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없애도 무방하다 그러면 없애자는 얘기가 되죠. 그대로 원안대로 놔두자는 얘기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한번 개정해 놓으면 계속 승계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 않느냐 굳이 여기에다 2항을 놔둘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

장님이 답변하실래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입니다. 우리 관내에 '88년 이전에 허가사항이 있었다 하면 이것은 당연히 그대로 놔둬야 될 조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 이런 경과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삭제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존속해 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 구의 어떤 특수한 사정보다는 일관성을 위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宣相善委員 이것이 1988년 5월 1일날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승계가 되는 겁니다. 승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허가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이 조례만 그렇거든요. 다른 조례가 만약에 경과규정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존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宣相善委員 아니, 승계가 되니까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아니죠. 다른 조례도 경과규정이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승계했다고 해서 경과규정을 삭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반 타 조례 같은 것이 그런데 이 조례만 굳이 삭제한다는 것은

○宣相善委員 아니, 삭제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굳이 거기다 넣어놓을 필요가 없고 '88년 제정이 되어서 당연히 승계가 되는데 뭐하러 굳이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그렇다면 입법기술상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일단 승계가 끝나면 다 삭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지역경제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에 관한 법제처 규정이 이 부칙규정은 경과조치로서 모든 법률에 있어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법제처 기준을

○宣相善委員 잠깐만요.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다 계속 부칙을 '92년 2월 8일날 이것도 되어 있고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데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법제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이라든가 모든 법률 우리 관보에도 보면 즉 그렇게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확실하게 제가 법제처 기준을 다시 한 번 보고

○宣相善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전문위원의 자문을 얻어서 합시다마는 없애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鄭倫漢 清掃行政課長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쓰레기 대행업체가 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을 알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清掃行政課長 鄭倫漢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宣相善委員 그냥 알고만 있다는 것뿐 아니라 금년부터는 어떻게 해서 우리 종로구의 쓰레기를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깨끗한 거리, 정말로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겠느냐 아무리 말로만 해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거리 곳곳 이면도로 골목골목을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저기 쓰레기는 난립해 있고 정말로 이것이 과연 아름다운 종로인가, 누가 반문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 쓰레기로부터 벗어나는 정말로 참다운 종로를 만들겠느냐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清掃行政課長 鄭倫漢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소로 넘어가고 과도기에 있으면서 원활하지 못하게 뒷골목이 지저분하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전화로나 사적으로 주셨을 때마다 잘해보겠다고 한 답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미비했던 점과 저희들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부분 등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내실화하고 이번 감사원 감사나 어떤 자체감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 지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해서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이 돈이 되지 않고 비용만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내부적인 결재 진행과정과 계획 중에 있는데 확실히 그것은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협조가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일정부분을 수집하면 항상 청결이 유지되는 수준까지 하면 우리 구청에서 좀 도와주고 또 대형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던 것을 직영체제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직영에서도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미비점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은 협조를 해주시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홍보도 해주시고 더불어 청소는 함께 하자는 분위기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정착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앞에서 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뒷받침이 되도록 간단한 시스템은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각 가정에서 놔두면 지금 우리 구에서 수거날짜가 동마다 정해져 있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지금 동마다 틀리게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동마다 통일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해서

**○宣相善委員** 글세 화, 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날짜에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인인데, 그래서 주민들은 정말 뭔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자기 집 앞에 시간대에 내놓으면 즉시즉시 수거를 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보니까 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날짜만 정해놓고 직능단체나 주민회의에서 주민들한테 홍보

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간대 그 날짜에 가져가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과연 종로구청은 밀하는 곳이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시한 제날짜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행업체나 또 일반업체에서도 한다는데 앞으로 직영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본 위원이 일찍부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차 집행부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수거를 해도 메리트가 없어요.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안하거든요. 그러면 그 적자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빨리빨리 수거할 수 있게 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익이 없으면 누구든지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럼 적자부분을 우리 구에서 메워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청소과장이 일부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 수거가 되는데 용역준 지역에서 일부 수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안 치워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과장이 일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마는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나오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모아놴다가 처리해야 되는 사례가 있어서 대형폐기물은 수수료를 구청에서 직접 받고 그것을 치워주는 방향으로 용역 지역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든지 저희가, 사실 재활용품을 용역업체에서 치우는 것은 자기네들한테 재활용품 파는 것을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연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수거를 해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타구 사례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직영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그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원만하게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서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 확보만 된다면 저희들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그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이 없잖아요?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적정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만 해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부지 확보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宣相善委員 전혀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동안에 청소적환장을 하려고 몇 군데 물색을 했는데 그 이야기 나가자마자 민원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했고 지금 현재도 물색을 합니다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관내가 아닌 타구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만약이 그것이 된다면

○宣相善委員 좋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부지를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좀 부탁드립니다.

○宣相善委員 그리고 2000년도 12월 12일 제107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쓰레기 할아버지 제도를 도입하자 제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골목골목 무단 투기하는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별도로 치울 수 있게 쓰레기 할아버지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鄭倫漢課長이 답변하시겠습니까?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清掃行政課長입니다. 그 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실 때 좋은 제안이라 생각

되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 맞춰서 지금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서 청소 담당하던 일부가 저희 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분 중에 새롭게 저희들이 청소지도층을 결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시켜서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되어서 실제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단체에 계신 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운영할 수 있게끔 더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실제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왜 그 안을 제의했느냐 하면 지금 경로당에 보면 할아버지들이 고스톱을 치고 이렇게 무료하게 보냅니다. 실제적으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다소 지원을 하면서 운영한다면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질문했던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님! 조금 이따가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지루해 하시니까

○宣相善委員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崔康洵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崔康洵委員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동네에서 가장 가정방문을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통장들은 그 통에서 고지서 같은 것을 돌리면서 가정방문을 한다고 하지만 또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보통 2년 후면 자리를 옮기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그 지역을 고향같이 생각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여기 가족에 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을 돌아다니다 보면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강아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민원해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그것을 왜 주민들이 해결하지 우리 의원들한테 이

런 것을 부탁을 합니까?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고발하게 되면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법을 정해서라도 강아지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마침 이 자리에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엔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어서 옛날에는 단독이라 한 주택에서 한 가정이 살았지만 지금은 보통 4가구에서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구가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데 요즘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것을 모두가 잘 알겠지만 이렇게 강아지를 많이 사육하면서 이웃 간의 갈등도 많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강력한 단속을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지금 저희가 가축이라고 보는 것은 애완용이나 집에서 키우는 것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崔康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파트나 연립 같은 곳에서 개 같은 것을 키워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하나 심한 소음이 있다면 우리가 소음규제로 하겠지만 가끔 개가 짖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문제는 법 이전에 주민들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 하나의 기초질서인데 이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계도를 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떤 스티커든지 공동주택에다가 '서로 기초질서를 지킵시다' 하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 계도하는 방법으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崔康洵委員 본 위원도 진돗개가 좋다고 해서 옥상에다 두 마리를 키웠는데 개가 사람 위에 있으면 상당히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두 마리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해서 개를 키우면서 문을 열어놓으면 나가서 계단에다 똥도 싸고 그래서 밤에 집에 오다보면 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밟고 집에 들어오면 요즘은 강아지들이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 가지고 사람하고 냄새가 똑같아요. 아주 불쾌한 일이 많은데 이러한 법 제도를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地域經濟課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는 동물들을 방기했다든가 노상에다 내보내 가지고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나 개 이런 것들만을 동물구조 협회하고 단가계약을 연간으로 체결해서 그쪽에서 포획해 가지고 일정기간 보관을 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 처분한다든가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애완용이라든가 가정에서 한두 마리 좋아서 기르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규제할 만한 마땅한 강제규정이 다른 법률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활복지국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개를 풀어 내놔 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게 했을 경우에는 신고해서 포획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시끄럽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할 현실적 법적인 장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계도해서 자중하도록 설득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崔康洵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崔康洵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金容善 地域經濟課長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8쪽에 보면 말이예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종로1·2·3·4가동과 5·6가동, 창성동과 옥인동, 사직동, 송인2동, 신영동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송인2동 출신이기 때문에 송인2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묘 주변이라고 국한되어 있는데 200가구 정도로 되어 있네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가사회사로부터 금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아직 극동가스 측에서 지

난년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이 계획은 사실 작년도에 만들어졌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도시가스 와 극동도시가스에서도 금년도 물량을 상당히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도 받고 그런데 이 극동의 경우에는 외국인 자본이 투자가 50이랍니다. 반면인데 금년도에 제가 2월달에 우리가 너무나도 도시가스회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 의견도 어떤 신년도 보고라든가 구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도시가스 민원사항들을 총괄적으로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시가스 측과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하자, 우리 의견도 반영을 해야지 우리가 도시가스회사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2월초에 도시가스 측 관계자들 책임자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저희 과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사전에 구의원님들한테도 담당자부터 미리 조사를 해봐서 조사서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랬는데 황당한 일이 작년도보다도 금년도에 도저히 예산 투입을 극동도 거의 형편없을 정도로 삭감이 되었답니다. 종로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았는데도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고 서울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부담동하고 평창동 같은 경우에 250가구밖에 못하겠다고 나자빠지고 있고 극동도 예산이 10억도 안된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아주 저희가 곤란한 지경이 되어 있고 동묘, 송인2동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난색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당신들하고도 약속했고 구의원님들하고도 약속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시켜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 측에서도 제가 주장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위원님한테 100% 확정적으로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립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

습니다. 현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宣相善委員** 예, 알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우리 종로 LNG 보급률이 77.1%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예상보급률 84.3% 이것은 어떤 지역입니까? 금년도에 4천 가구 목표로 했을 때 2001년도 연말에 가면 84.3%가 된다는 거죠?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예.  
**○宣相善委員** 그런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인2동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이제 저희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재개발사업이 아니면 더불어서 못할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통계치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宣相善委員** 알겠습니다. 金容善 課長께서는 어느 지역경제과장보다도 헌신적으로 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도 종로에 청정연료, 안전하고 좋은 연료를 공급시키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든지 가스회사의 독점 이런 것을, 이것에 대한 피해를 막아야 되겠어요. 너무나도 할 수 있는 것도 지지부진하게 끌어나가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아요. 몇 군데 몇 가구 끌어다 하는 것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정말로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실무과장이면서도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도시가스회사 측을 불러놓고 정말로 극언을 제가 하고 막말 비슷하게 하고 욕설까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회사는 제가 간부들을 모아놓고 당신 회사는 망해야 될 회사라고 극언을 했는데 서울도시가스는 부담동에 자기들이 금년 말까지 공급하겠다고 한 공사를 동절기 공사를 중단해서 거의 한 삼사백세대가 난방도 못하고 엄청난 주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시에까지 보고를 해서 회사에 경고조치를

하라고 노발대발하고 욕설까지 해가면서 이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산자부예다 담당자가 욕설까지 하고 싸웠습니다. 왜냐 규제개혁 때문에 사업자가, 옛날의 공급 의무사항까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규제개혁 철폐냐 주민들을 위한 규제개혁 철폐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회사를 위해서 규제개혁 철폐를 해놓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가스회사 허가도 시에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아무런 압력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정적으로 매달려서 도시가스회사에다 으름장을 아무리 놔봐야 잘 먹혀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구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심정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宣相善委員**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종로에 정말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금년 말에 84.3%를 할 수 있도록 각 가스회사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하튼 송인2동 20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것도 금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 것이 연료 부분 하나라도 효자노릇을 한다, 더군다나 우리 서민들한테는 큰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슴깊이 새기면서 정말로 우리 종로 주민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16페이지를 좀 봐주실까요? 아동보육의 내실화에서 노후시설 보수 6개소 4,200만원 이죠? 이게 6개소가 어디어디 시설을 주로 어떤 곳을 합니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사회복지과장 崔容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어린이집하고 부암어린이집하고 충신, 은행나무, 인왕, 상록수

**○金正大委員** 송인어린이집은 동청사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는 무엇을 보수를 하죠?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중앙난방식을

**○金正大委員** 그것은 그 밑에 도시가스 난방시설이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가스하고 틀립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그렇죠.

**○金正大委員** 난방은 도시가스를 하면서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는 별도로 도시가스 안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것은 중앙난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시설입니다.

**○金正大委員** 개별난방으로 바꾸는데 이 밑에 도시가스 난방시설 2개소 이것도 송인동입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데입니다.

**○金正大委員** 아까 어떤 과장님 답변에 업무보고는 작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아니 금년에 만들었는데 도시가스 계획이 작년에 목표를 잡았던 거고

**○金正大委員** 예산 조정 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예산이 확정된 후에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金正大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특수보육시설 설치하는 데 3,000만원을 들여서 무슨 특수시설을 설치해요?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이것은 방과 후 교실입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방과 후 교실을 특수보육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맞벌이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노틀담수녀회라고 되어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수녀회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金正大委員 수녀회에다 위탁을 해서 3,000만원을 쥐서 방과 후에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국민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와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집에 없으니까

○金正大委員 교사 1인에 정원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사가 수녀님들이 나가서 가르치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아닙니다. 노틀담수녀회에서는 위탁 운영을 맡고 교사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 나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30명씩을 돌보는 대가비인가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그렇죠.

○金正大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장에 신규사업 해가지고 소요 예산이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영화 같은 것을 만듭니까?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어요? 이것도 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예, 맞습니다.

○金正大委員 어디에서 상영을 합니까? 제작을 해서 어디어디에다 줍니까? 이것을 무슨 1,200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제작한다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청소년 홍보관련 프로그램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개발을 해서 시청각자료로 책자나 비디오로 이런 학교에다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金正大委員 종로구 내에 있는 거기에다 돌려준다?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배포를 한다는 겁니다.

○金正大委員 이게 1,200만원이나 들어요? 지금 현재 시작을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아직 안했습니다.

○金正大委員 되었습니다. 이만하고 몇 가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東奎 金正大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8分 會議中止)

(16時03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東奎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1年度 保健所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8. 2001年度 監査擔當官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9. 2001年度 施設管理公園 所管 主要業務計劃 報告의 件

○委員長 李東奎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막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금년 1월 7일자로 창단 3주년을 맞이하여 소관 위원장으로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창립 3주년을 맞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늘 우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신 金誠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구민회관 등 구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 수익을 극대화함은 물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뜻에 부응하여 그동안 임직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민간시설은 물론 타 기관을 앞지르는 명실상부한 공단으로 급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더 매진하시어 모든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내실있는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및 제9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李星世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항을 보면 6쪽에 보십시오. 소독대상지역이 방역취약지역 8개 동 25개 통을 선정했습니다. 취약지역을 선정한 기준은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숲이 우거진 홍제천 주변이라든지 집수정 같은 데 연못 주위에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우선 순위로 했고, 두번째는 취약한 적환장 시설이라든지 또 공중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주변이라든지 또 시장 주변에 아주 오염된 감염이 쉬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런데 여기 송인2동을 보면 7, 8, 9통 이렇게 3개 통이 되어 있거든요. 이 통은 주로 차량이 다니기 쉬운 곳 상가지역입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상가지역보다는 취약지역은 정말로 산동네, 숲이 우거지고 이런 데에 모기가 발생하거나 이런 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가 주변 대로변이 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곳으로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保健所長 李星世 그러니까 제일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숲속이라든지

○宣相善委員 그런데 여기는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기가 크게 많이 있을 곳이 아닌데 이런 방역을 하기 쉬운 곳으로만 정해놨습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그런데 제가 순찰을 돌아다니는데요 상당히 취약해요. 그리고 쓰레기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고 거기가 좀 취약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주변에 더군다나 수거식 화장실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더군요. 그 골목 주변이요 그래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송인2동에는 예를 들자면 7, 8, 9통은 상가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정말 취약지역이라는 곳은 소위 달동네, 산동네,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 정말로 숲이 우거지고 이런 데를 취약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제외해 놓고 가장 차가 다니기 쉬운 이런 곳으로만 정해 졌다는 말이에요. 송인2동의 경우에는, 다른 동네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保健所長 李星世 물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장소도 선정되어 있고, 창신동 낙산공원 주변의 재래식 화장실 주변도 선정되었습니다.

○宣相善委員 여하튼 이런 곳들은 주민들이 지금 여름철이 되면 왜 방역을 하지 않느냐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산동네 이런 데에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취약지역으로 생각해서 그런 데를 많이 방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12쪽에 보면 약업소 및 마약류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대상업소가 480개 업소네요. 정말로 마약이 우리 나라에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장실만 가도 지금 1회용 주사기가 쓰레기통에 몇 개씩 발견되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점검방법은 제보, 진정, 정보에 의거 문제 업소를 수시로 점검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평소에 우리 구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을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의약과장이 답변드려도 되죠? 소관과장입니다.

○醫藥課長 丁基聲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마약에 관한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되었는데요 마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에 관한 처벌이 2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경고조치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적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보에 의해 했습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향정신성 의약품은 정기적인 감시에 의해서 적발했습니다.

○宣相善委員 작년도에 2건밖에 없습니까?

○醫藥課長 丁基聲 예.

○宣相善委員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도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발을 못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적발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藥課長 丁基聲 예, 명심하겠습니다.

○宣相善委員 예, 그리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東奎 宣相善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에는 무슨무슨 부서의 아무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독감예방접종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실시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지도과장이 소관 과장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세밀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保健指導課長 金相駿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1만명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洪起瑞委員 만명을 했다고요? 우리 구민들이 접종을 하러갔다가 약이 없어서 못한 사례가 있죠?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2000년도에 우리 종로구민이 왔다가 접종을 못한 거요? 그것이 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오는 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못맞은 경우는

○洪起瑞委員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대상은 만 65세 이상 종로구민에 한하고

○**洪起瑞委員** 종로구민에 한해서 만 65세 이상만 되나요? 그러면 그 65세 이하에서는 안되나요?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65세 이상만 해주라고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65세 이상만 하다가 백신이 초반기에는 백신의 양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여러 번에 나눠서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 백신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금년에는 약을 많이 확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구민들이 접종을 하는 분들이 그냥 돌아가는 분이 없이 사전에 미리미리 약을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존 일반병원에서도 접종을 합니다. 일반병원에서도 하는데 일반병원에서는 1만 5,000원인가 받는다고 해요. 보건소는 2,600 얼마 받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건소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갔다가 그냥 되돌아와 가지고 굉장히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약품 확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갔는데 되돌아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金周會**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을 받고 있죠?

○**監査擔當官 金周會** 예.

○**洪起瑞委員**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일반 보험회사에 보험으로 가입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년이다 20년이다 매월 2만 5,000원이면 2만 5,000원 3만원이면 3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까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실 보험회사 측에서는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이게 자료를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주지 타인이 가도 안 해줘요.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나갈 방법이 없었어?

○**監査擔當官 金周會**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침이 시에서 내려오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그런 것을 제외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지침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달에는 3만원 들어가고 다음 달에는 2만원 들어가고 한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것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약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2만원이면 2만원이 20년간 꾸준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2만원 12달이면 24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해주면 될텐데 그런 부분까지 잔액증명을 첨부하라고 하니까 시간 바쁘고 하면 많은 액수 같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1만원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다 하라고 하니까 많은 불편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봐도 나오잖아요. 1년이면 연간 24만원 들어간다 연간 36만원 들어간다는 게 다 나오는데 그런 고통을 주면 안되지

○**監査擔當官 金周會**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매월 얼마씩 일정금액을 넣는데 그것을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계약이 1년에 12번 넣어야 되는데 6번밖에 안 넣는 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는 잔액이 얼마냐는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현재 어려우시더라도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도 몇 가지는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이런 것이 지금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제출해보자 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金誠泰**理事長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민생활관과 구민회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죠?

○**施設管理公園 理事長 金誠泰**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거기에 강사들이 몇 분이나 돼요? 수영강사가

○**施設管理公園 理事長 金誠泰** 수영의 경우는 전문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생활관과 구민회관을 합쳐서 12명 정도 됩니다.

○**洪起瑞委員**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오전에 문화진흥과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이나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들을 우리가 무료로 운영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은석수영장에 나가서 무료로 강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구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이나 거기에 나가서 우리 수강생들한테 지도를 해주면 다만 인건비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건데 굳이 사설로 하고 있는 데를 은석을 내보내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여기에 가서 무료강습을 받다보면 우리 구민회관의 수강자나 이런 부분의 수강자를 은석수영장으로 많이 뺏길 수 있는 계기도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하고 숙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편성된 강사가 둘이면 둘, 셋이면 셋 그 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수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굳이 사설 수영장에 인원을 뺏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우리 **金誠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園 理事長 金誠泰** 예, 저희가 수영 지도를 하고 있는 선생님 구성은 전문직 정규직원과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계약직 직원, 그 다음에 시간강사 이들 외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이 구민생활관의 경우는 14명, 구민회관의 경우는 5명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설 수영장에 가서 강의를 해주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 개인 자격으로 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洪起瑞委員**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강사들을 수당을 지급해요.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구민생활관의 강사들이 여기에 나가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구청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 강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입을 해서 쓰게 되면 두 사람을 쓰면 두 사람분의 인

건비가 그만큼 축적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사설수영장에다가 우리가 굳이 강사를 투입해서 한 명의 인원이라도 그쪽에 뺏길 수 있는 여건도 있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여건도 우리가 강사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施設管理公園 理事長 金誠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인력 활용분야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평균 근무시간이 사실 규정보다 조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저희 구청 예산으로 강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겨주신다면 저희가 성의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진흥과하고 같이 숙의를 해서 유입을 해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施設管理公園 理事長 金誠泰** 예, 알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東奎** **洪起瑞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李星世 保健所長**님, **金周會 監査擔當官**님, **金誠泰 施設管理公園 理事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전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

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  
고 많으셨습니다.

(16時24分 散會)

(參照)

2001年度 主要業務計劃

(保健所)

2001年度 主要業務計劃

(監査擔當官)

2001年度 主要業務計劃

(施設管理公團)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出席委員數 9人

李東奎 崔康洵 鄭泰淳 千相旭  
玄壽漢 劉燦鍾 洪起瑞 金正大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保健所長 李星世  
監査擔當官 金周會  
總務課長 李東明  
企劃豫算課長 林啞宅  
自治行政課長 李秀傑  
民願奉仕課長 林星圭  
文化振興課長 林秉義  
旅券課長 任炯正  
社會福祉課長 崔容洵  
地域經濟課長 金容善  
環境衛生課長 洪柱喆  
清掃行政課長 鄭倫漢  
保健行政課長 李鐘珪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醫藥課長 丁基聲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金誠泰